

●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903호

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-466호(2019.9.5.)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1090호(2021.9.16.) 및 제2021-1110호(2021.9.24., 정정)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」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합니다.

2023년 1월 5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산업단지 명칭(변경없음)

- 동두천 국가산업단지

2.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(변경없음) : 계재생략

3.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

- 위 치 :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일원
- 면 적 : 266,717㎡

4.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(변경없음)

- 개발기간 : 2019년 ~ 2025년
- 개발방법 : 공영개발방식

5.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(변경)

가. 유치업종(변경)

한국표준산업분류(중분류)	비고
C10 식료품 제조업(신규)	
C13. 섬유제품 제조업; 의복 제외	
C14. 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
C15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(신규)	
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(신규)	
C20.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 의약품 제외	
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(신규)	
C24. 1차 금속 제조업	
C26. 전자 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
C27 의료, 정밀,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(신규)	
C29.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
C30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
C33. 기타 제품 제조업(신규)	

나. 유치업종의 배치계획(변경)

구분	면적(㎡)			구성비(%)			비고
	기정	변경	변경후	기정	변경	변경후	
합계	184,110	-	184,110	100.0	-	100.0	
섬유 관련 산업	86,738	-	86,738	47.1	-	47.1	
C10 식료품 제조업(신규)							
C13. 섬유제품 제조업; 의복 제외							
C15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(신규)	25,596	-	25,596	13.9	-	13.9	
C27 의료, 정밀,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(신규)							
C29.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중복)							
C14. 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31,819	-	31,819	17.3	-	17.3	
C33. 기타 제품 제조업(신규)							
C20.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 의약품 제외	29,323	-	29,323	15.9	-	15.9	
기타 산업	97,372	-	97,372	52.9	-	52.9	
C24. 1차 금속 제조업	12,761	-	12,761	6.9	-	6.9	
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(신규)							
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(신규)	35,492	-	35,492	19.3	-	19.3	
C26. 전자 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						
C29.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25,973	-	25,973	14.1	-	14.1	
C30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23,146	-	23,146	12.6	-	12.6	

6.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(변경)

-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, 한국토지주택공사
- 성 명 : (기정)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
(변경)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

7.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(변경없음) : 계재생략

8.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(변경)

가. 용도지역계획(변경없음) : 계재생략

나. 토지이용계획(변경없음) : 계재생략

다. 기반시설계획(변경)

1) 교통시설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2) 공간시설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3) 유통 및 공급시설(변경)

가) 용수공급계획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나) 전력공급계획(변경)

- 사업지구 전력 설비용량은 (기정) 14,534kVA → (변경) 19,972kVA이며,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인근에 위치한 남면변전소에서 공급

다) 통신공급계획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라) 에너지공급계획(변경)

- 연간 열 수요량은 (기정) 173,814Gcal/년 → (변경) 170,691Gcal/년이며, (주)대륜이엔에스의 배관망을 통하여 도시가스 공급

4) 방재시설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5) 환경기초시설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가) 오·폐수처리계획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나) 폐기물처리계획(변경)

- 운영시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(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대상 제외)은 (기정) 30,186.2톤/년 → (변경) 53,916.1톤/년으로 산정되었으며, 본 사업지구의 조성면적은 266,717㎡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
-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폐기물은 가연성 및 불연성 처리 대상으로 분리하여 위탁처리
- 사업장 지정폐기물 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폐기물은 전량 위탁처리 할 계획이며 「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(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공시 등) 및 제16조(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·수탁 계약 등)」의 규정에 의거한 적정처리 업체를 선정토록 할 것임

9. 재원조달계획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10. 수용·사용할 토지·건축물,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

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11. 에너지사용계획(변경)

가. 열수요 예측(변경)

1) 산업시설용지(제조시설용지) 열수요 예측(변경)

■ 기정

구분	부지면적 (㎡)	직접열사용량 (Gcal/년)	간접열사용량 (Gcal/년)	합계 (Gcal/년)
합계	184,110	59,229	113,458	172,687
섬유제품 제조업	25,596	2,154	18,554	20,708
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31,819	3,985	12,974	16,959
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	29,323	35,441	68,187	103,628
1차 금속 제조업	12,761	8,253	1,190	9,443
전자 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35,492	3,668	7,867	11,535
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25,973	1,913	840	2,753
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23,146	3,815	3,846	7,661

구분	간접열 (Gcal/년)	가동율 (%)	가동시간 (h/년)	평균부하 (Gcal/h)	부하율 (%)	최대부하 (Gcal/h)
합계	113,458	-	-	15.3	-	22.0
섬유제품 제조업	18,554	83.1	7,280	2.5	75.0	3.3
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12,974	84.0	7,358	1.8	75.0	2.4
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	68,187	86.6	7,586	9.0	87.5	10.3
1차 금속 제조업	1,190	83.8	7,341	0.2	33.0	0.6
전자 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7,867	85.1	7,455	1.1	33.0	3.3
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840	85.4	7,481	0.1	33.0	0.3
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3,846	76.8	6,728	0.6	33.0	1.8
산업단지 최대부하		동시부하율 90% 적용				19.8

■ 변경

구분	부지면적 (㎡)	직접열사용량 (Gcal/년)	간접열사용량 (Gcal/년)	합계 (Gcal/년)
합계	184,110	63,834	105,730	169,564
식료품 제조업	3,839	618	3,797	4,415
섬유제품 제조업; 의복 제외	10,238	1,773	6,417	8,190
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15,910	1,993	6,487	8,480
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3,839	652	5,682	6,334
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8,873	1,389	1,715	3,104
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 의약품 제외	29,323	35,441	68,187	103,628
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8,873	386	856	1,242
1차 금속 제조업	12,761	8,253	1,190	9,443
전자 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17,746	1,704	3,655	5,359
의료, 정밀,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	3,840	167	370	537
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29,813	2,180	957	3,137
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23,146	3,815	3,846	7,661
기타 제품 제조업	15,909	5,463	2,571	8,034

구분	간접열 (Gcal/년)	가동율 (%)	가동시간 (h/년)	평균부하 (Gcal/h)	부하율 (%)	최대부하 (Gcal/h)
합계	105,730	83.1	-	14.5		21.4
식료품 제조업	3,797	79.5	6,964	0.6	60.2	1.0
섬유제품 제조업; 의복 제외	6,417	83.1	7,280	1.0	67.9	1.5
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6,487	84.0	7,358	0.9	50.8	1.8
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5,682	94.8	8,304	0.7	64.0	1.1
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1,715	57.5	5,037	0.3	37.8	0.8
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 의약품 제외	68,187	86.6	7,586	9.0	78.6	11.5
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856	87.0	7,621	0.1	37.3	0.3
1차 금속 제조업	1,190	83.8	7,341	0.2	76.6	0.3
전자 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3,655	85.1	7,455	0.5	74.0	0.7
의료, 정밀,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	370	83.8	7,341	0.1	37.3	0.3
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957	85.4	7,481	0.1	46.2	0.3
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3,846	76.8	6,728	0.6	55.9	1.1
기타 제품 제조업	2,571	91.3	7,998	0.3	44.1	0.7
산업단지 최대부하	동시부하율 90% 적용					19.3

- 2) 기타시설용지 열수요 예측(변경없음) : 계재생략
- 3) 기타시설용지 냉방용 열수요 예측(변경없음) : 계재생략
- 4) 기타시설용지 취사용 열수요 예측(변경없음) : 계재생략

나. 전력수요 예측(변경)

- 1) 산업시설용지 전량사용량 및 전력수요 예측(변경)

■ 기 정

구분	부지면적 (㎡)	전력원단위 (kWh/㎡·년)	전력사용량 (MWh/년)	비 고
합계	184,110	-	69,489	
섬유제품 제조업	25,596	485	12,414	
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31,819	153	4,868	
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	29,323	601	17,623	
1차 금속 제조업	12,761	936	11,944	
전자 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35,492	384	13,629	
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25,973	109	2,831	
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23,146	267	6,180	

구분	전력사용량 (MWh/년)	가동율 (%)	평균부하 (kW)	부하율 (%)	최대부하 (kW)
합계	69,489	-	9,442	-	13,827
섬유제품 제조업	12,414	83.1	1,705	67.9	2,512
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4,868	84.0	662	50.8	1,302
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	17,623	86.6	2,323	78.6	2,956
1차 금속 제조업	11,944	83.8	1,627	76.6	2,124
전자 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13,629	85.1	1,828	74.0	2,471
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2,831	85.4	378	46.2	819
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6,180	76.8	919	55.9	1,643
산업시설 합성최대부하(kW)	13,827 ÷ 1.35(부동율)				10,242

■ 변경

구분	부지면적 (㎡)	전력원단위 (kWh/㎡·년)	전력사용량 (MWh/년)	비 고
합계	184,110	-	74,775	
식료품 제조업	3,839	466	1,789	
섬유제품 제조업; 의복 제외	10,238	485	4,965	
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15,910	153	2,434	
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3,839	632	2,426	
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8,873	1,223	10,852	
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 의약품 제외	29,323	601	17,623	
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8,873	336	2,981	
1차 금속 제조업	12,761	936	11,944	
전자 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17,746	384	6,814	
의료, 정밀,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	3,840	336	1,290	
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29,813	109	3,250	
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23,146	267	6,180	
기타 제품 제조업	15,909	140	2,227	

구분	전력사용량 (MWh/년)	가동율 (%)	평균부하 (kW)	부하율 (%)	최대부하 (kW)
합계	74,775	-	-	-	19,286
식료품 제조업	1,789	79.5	257	60.2	427
섬유제품 제조업; 의복 제외	4,965	83.1	682	67.9	1,005
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2,434	84.0	331	50.8	652
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2,426	94.8	292	64.0	456
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10,852	57.5	2,154	37.8	5,698
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 의약품 제외	17,623	86.6	2,323	78.6	2,956
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2,981	87.0	391	37.3	1,048
1차 금속 제조업	11,944	83.8	1,627	76.6	2,124
전자 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6,814	85.1	914	74.0	1,235
의료, 정밀,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	1,290	83.8	176	37.3	472
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3,250	85.4	434	46.2	939
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6,180	76.8	919	55.9	1,644
기타 제품 제조업	2,227	91.3	278	44.1	630
산업시설 합성최대부하(kW)	19,286 ÷ 1.35(부등율)				14,286

2) 기타시설용지 전력수요 예측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다. 에너지수요예측 종합(변경)

■ 기정

구분	열수요(Gcal/년)						전력수요 (kVA)
	공정열		난방/급탕	취사용	냉방	계	
	직접열	간접열					
동두천 국가산업단지	59,229	113,458	958	37	132	172,687	14,534

■ 변경

구분	열수요(Gcal/년)						전력수요 (kVA)
	공정열		난방/급탕	취사용	냉방	계	
	직접열	간접열					
동두천 국가산업단지	63,834	105,730	958	37	132	170,691	19,972

라. 에너지 공급계획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마. 집단에너지 공급계획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12.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(지구단위계획을 포함)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(변경)

가. 도시·군관리계획(용도지역·지구) 결정 조서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나. 도시·군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 결정 조서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다.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 도면 : 게재생략

라.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 조서(변경)

1) 지구단위계획구역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2) 용도지역·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·지구간의 변경에 대한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 조서

○ 게재생략(도시·군관리계획(용도지역·지구) 결정 조서와 같음)

3)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 조서

○ 게재생략(도시·군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 결정 조서와 같음)

4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조서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5)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·군관리 계획 결정 조서(변경)

가) 산업시설용지

■ 기정

가구번호	구분		계획내용																			
산업 시설 용지 A1~A13	용도	허용 용도	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업종으로 동두천시에서 규정하는 오·폐수 발생기준에 적합한 공장에 한함																			
			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해당업종</th><th>위치</th></tr><tr><td rowspan="3">섬유 관련 산업</td><td>C13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제외)</td><td>A2, A10</td></tr><tr><td>C14 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</td><td>A1, A2</td></tr><tr><td>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외)</td><td>A12, A13</td></tr><tr><td rowspan="4">기타 산업</td><td>C24 1차금속 제조업</td><td>A11</td></tr><tr><td>C26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</td><td>A4, A5, A6</td></tr><tr><td>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</td><td>A3, A7</td></tr><tr><td>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</td><td>A8, A9</td></tr></table>	구분	해당업종	위치	섬유 관련 산업	C13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제외)	A2, A10	C14 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A1, A2	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외)	A12, A13	기타 산업	C24 1차금속 제조업	A11	C26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A4, A5, A6	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A3, A7	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A8, A9
			구분	해당업종	위치																	
			섬유 관련 산업	C13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제외)	A2, A10																	
				C14 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A1, A2																	
				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외)	A12, A13																	
			기타 산업	C24 1차금속 제조업	A11																	
				C26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A4, A5, A6																	
		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	A3, A7																		
		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	A8, A9																		
불허 용도	-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「물환경보법 시행규칙」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「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및 「경기도 환경기본 조례」 별지별표에 따른 국가 및 경기도 대기환경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																					
	건폐율	80% 이하																				
용적률	350% 이하																					
높이	5층 이하																					
배치/형태/색채	시행지침 참조																					
건축선	- 건축한계선 : 1~5m ※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																					
기타	- 획지분할 허용(적정 세장비(1:1~1:2)를 감안하여 최소 1,650㎡ 이상으로 분할 가능) - 획지 합병 허용																					

■ 변경

가구번호	구분		계획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		
산업 시설 용지 A1~A13	용도	허용 용도	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업종으로 동두천시에서 규정하는 오·폐수 발생기준에 적합한 공장에 한함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해당업종</th><th>위치</th></tr><tr><td rowspan="7">섬유 관련 산업</td><td>C10 식료품 제조업</td><td rowspan="5">A2-7~A2-9, A10</td></tr><tr><td>C13 섬유제품 제조업; 의복 제외</td></tr><tr><td>C15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</td></tr><tr><td>C27 의료, 정밀,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</td></tr><tr><td>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</td></tr><tr><td>C14 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</td><td rowspan="2">A1, A2-1~A2-6</td></tr><tr><td>C33 기타 제품 제조업</td></tr><tr><td>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 의약품 제외</td><td>A12, A13</td></tr><tr><td rowspan="6">기타 산업</td><td>C24 1차 금속 제조업</td><td>A11</td></tr><tr><td>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</td><td rowspan="3">A4, A5, A6</td></tr><tr><td>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</td></tr><tr><td>C26 전자 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</td></tr><tr><td>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</td><td>A3, A7</td></tr><tr><td>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</td><td>A8, A9</td></tr></table>	구분	해당업종	위치	섬유 관련 산업	C10 식료품 제조업	A2-7~A2-9, A10	C13 섬유제품 제조업; 의복 제외	C15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27 의료, 정밀,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14 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A1, A2-1~A2-6	C33 기타 제품 제조업	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 의약품 제외	A12, A13	기타 산업	C24 1차 금속 제조업	A11	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A4, A5, A6	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6 전자 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A3, A7	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A8, A9
			구분	해당업종	위치																								
			섬유 관련 산업	C10 식료품 제조업	A2-7~A2-9, A10																								
				C13 섬유제품 제조업; 의복 제외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C15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C27 의료, 정밀,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C14 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A1, A2-1~A2-6																								
				C33 기타 제품 제조업																									
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 의약품 제외	A12, A13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타 산업	C24 1차 금속 제조업		A11																										
	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	A4, A5, A6																										
	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C26 전자 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A3, A7																											
	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A8, A9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불허 용도	-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「물환경보법 시행규칙」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「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및 「경기도 환경기본 조례」 별지별표에 따른 국가 및 경기도 대기환경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건폐율	80%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용적률	350%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높이	5층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배치/형태/색채	시행지침 참조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건축선	- 건축한계선 : 1~5m ※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타	- 획지 분할 허용(적정 세장비(1:1~1:2)를 감안하여 최소 1,650㎡ 이상으로 분할 가능) - 획지 합병 허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나) 지원시설용지

■ 기 정

가구번호	구분		계 획 내 용
지원 시설 용지 B1~B3	용도	허용 용도	「건축법시행령」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-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-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-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, 안마시술소 제외) -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 - 제6호 종교시설(봉안당 제외) - 제7호 판매시설(해당 준공업지역에서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) - 제9호 의료시설(정신병원 및 요양병원, 격리병원 제외) - 제10호 교육연구시설 - 제11호 노유자시설 - 제13호 운동시설 - 제14호 업무시설 - 제18호 창고시설 -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- 제24호 방송통신시설
		불허 용도	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건폐율		• 80% 이하
	용적률		• 400% 이하
	높이		• 5층 이하
	배치/형태/색채		• 시행지침 참조
	건축선		• 건축한계선 : 1~3m ※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
	기타		• 획지 합병 허용

■ 변경

가구번호	구분		계 획 내 용
지원 시설 용지 B1~B3	용도	허용 용도	「건축법시행령」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-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-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-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, 안마시술소 제외) -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 - 제7호 판매시설(해당 준공업지역에서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) - 제9호 의료시설(정신병원 및 요양병원, 격리병원 제외) - 제10호 교육연구시설 - 제11호 노유자시설 - 제13호 운동시설 - 제14호 업무시설 - 제15호 숙박시설(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에 의한 호텔업에 한함) - 제18호 창고시설 -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- 제24호 방송통신시설
		불허 용도	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건폐율		• 80% 이하
	용적률		• 400% 이하
	높이		• 5층 이하
	배치/형태/색채		• 시행지침 참조
	건축선		• 건축한계선 : 1~3m ※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
	기타		• 획지 합병 허용

다) 주차장용지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6)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 조서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마.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 : 게재생략

바.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(변경) : 게재생략

13.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14.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(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)

가. 지형도면 작성 조서

○ 동두천 국가산업단지

지역·지구 등 명칭	위치	면적(m ²)		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
동두천 국가산업단지	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일원	266,717	-	266,717	

나.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(변경없음, 게재생략)

15.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(031-860-2596)에 비치합니다.